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신원진술서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1까지를 각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12까지로 하고,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교육경험)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의4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다만, 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의 범위·이관·관리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의 경영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기록물을 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따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방법
2.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
3.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 1항제10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경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교법인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u>10. 임원의 신원증명서</u> <u><신 설></u>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u>1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 2호에 따른 임원의 신원진술서</u> <u>제9조의4(교육경험) 법 제21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험을 말한다.</u> <u>1. 법 제54의4조에 따른 기간제교 원으로 근무한 경험(「교육공무 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 원을 포함한다.)</u> <u>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 의 강사로 근무한 경험</u> <u>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다만, 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한다.)</u> <u>제9조의5 ~ 제9조의12 (현행 제9조 의4부터 제9조의11까지와 같음)</u> <u>제15조의 5(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의 범위·이관·관리 등) ①</u>

현행	개정안
	<u>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의 경영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u>
<신설>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u>
<신설>	<u>③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기록물을 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하여야 한다.</u>
<신설>	<u>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다. ⑤ 제3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따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방법 2.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 3.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연락처	044-203-7092, 6932